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21
----------	------

2021년 9월 8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1일, 김생환 의원 외 31명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1년 9월 8일 상정, 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생환 의원)

#### 1. 제안이유

-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학교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항)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1일 김생환 의원 등 32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621호로 발의되어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형식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실태조사 참여 학생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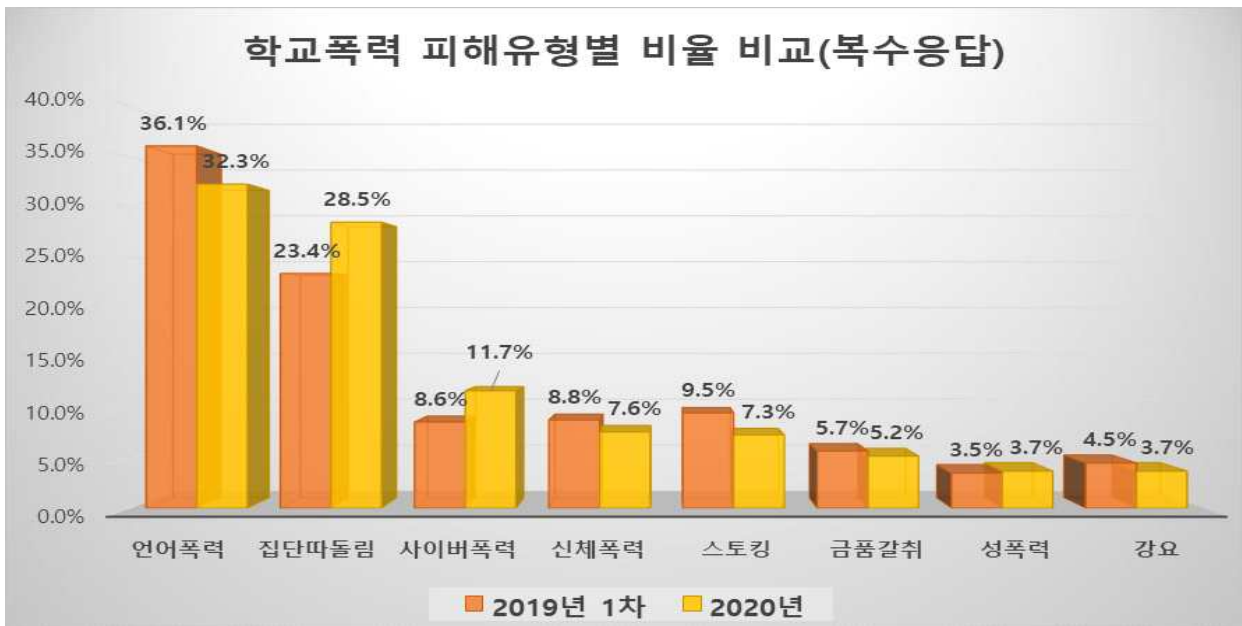
##### 가. 총론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연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장소를 가정 또는 학교로 특정하면서 학교에서 실시할 경우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2012년부터 도입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매 학기마다 학교폭력 실태

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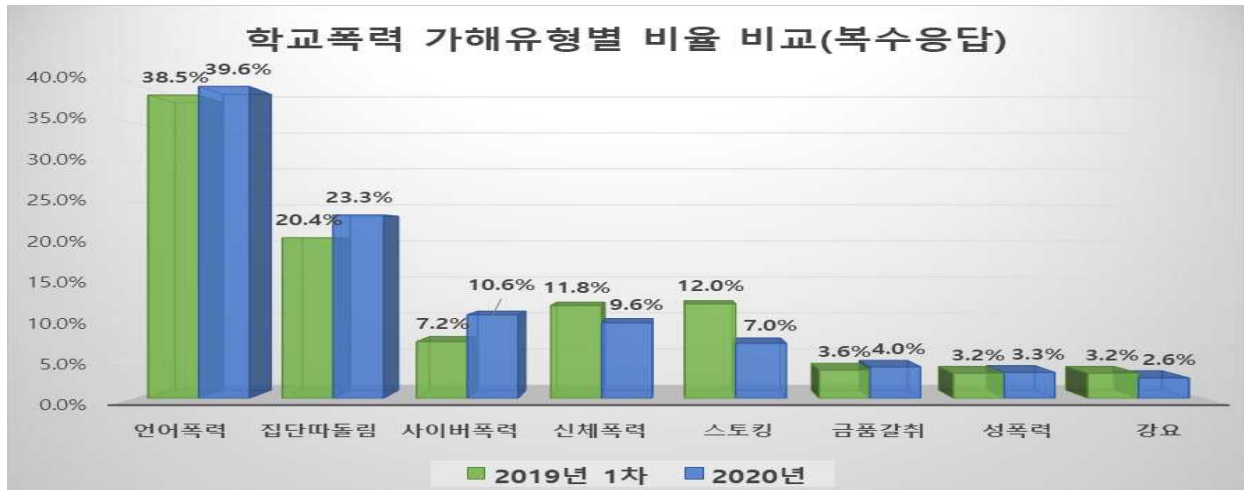
- 그러나 그동안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컴퓨터실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담당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 장소에서 진술서를 쓰게 하는 등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왔고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2)

###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생략)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 ⑫ (생략)

2) 「교사들 “학교폭력 실태조사” 요식행위“...서울교육청 토론회」 연합뉴스, 2017.7.10.



○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부는 시스템의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바일을 이용한 실태조사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sup>3)</sup>

○ 그러나 금년부터 교육부의 정책전환에 따라 모바일을 이용한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익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형식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의된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정책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 나. 조문에 대한 검토

○ 안 제11조제2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가정과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년부터 모바일을 이용한 실태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은 이미 가정이나 학교 이외에도 도서관이나 식당, 학원, 이동 중의 차량 등에서도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3) 「교육부 오늘부터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모바일 방식 없이 PC로만」 뉴시스, 2020.9.14.

바, 가정과 학교에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동 규정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참여 장소는 학생의 선택,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문제이며, 특정 장소에서 실태조사를 참여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실태조사 참여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면서 참여 장소 특정 규정을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601, 2021.8.19.).
- 한편 동 조문에는 단서규정으로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을 위해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독립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개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인데, 1년에 1~2회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위해 학교에서 독립적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다” 는 이유로 동 조문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601, 2021.8.19.).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작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시 학생의 개별 참여가 보장되도록 독립 공간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면서, 컴퓨터가 있는 특별실 등을 개방하거나 개방된 공간인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이미 개별 공간 마련을 통한 실태조사의 비밀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붙임 1] 참고)

이런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토록 한 것은 기존의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사항을 동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금년부터 모바일을 이용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가정이나 학교 이외에도 도서관, 학원, 독서실, 식당, 이동차량 등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가능하므로 조례로 그 장소를 가정이나 학교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21
----------	------------

제안연월일 : 2021년 9월 8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금년부터 모바일을 이용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가정이나 학교 이외에도 도서관, 학원, 독서실, 식당, 이동차량 등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가능하므로 조례로 그 장소를 가정이나 학교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수정함.

## 2. 주요내용

-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가정 또는 학교에서만 실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실태조사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 실시한다. 다만,” 을 “실태조사를” 로 수정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생략) <u>&lt;신설&gt;</u>  ②~③ (생략)	제11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u>실태조사</u> <u>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 실시한다, 다만,</u>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④(현행과 같음)	제11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u>실태조사</u> <u>를</u>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④(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생략) <u>&lt;신 설&gt;</u>    ② ~ ③ (생략)	제11조(학교폭력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